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7년 4월 7일

나. 회부일자 : 1997년 4월 7일

3. 제안이유

공유재산관리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을 운영하고 있는 바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4. 주요골자

- 현행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영세농가에게 토지매각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사고발생시, 폐천부지를 대부받은자에게 매각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시」 등에 적용하던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대상을 확대하여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유치한 공장용지로 매각」 하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 (안 제22조 제8호)

-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인 토지에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던 사용 및 대부요율 1000분의 25를 연도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코자 함 (안 제23조 제6항)

5. 검토의견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공유재산의 생산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 잡종재산 관리에 있어서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재산중에 "아파트형 공장, 산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토록 하였으며
- 잡종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있어서도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하던 것을 연도에 관계없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 부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